Capital Call 약 정 서

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"집합투자업자")는 한화 미국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(이하 "이 건 투자신탁")를 설정하여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hip LP 펀드의 Limited Partner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,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방법으로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며, 이와 관련하여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(이하 "스왑기관")과 FX Forward(통화선도거래) 및 Cross Currency Swap(통화스왑거래)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계약(이하 "장외파생상품계약")을 체결할 예정이다.

"집합투자업자"와 "스왑기관"은 "장외파생상품계약"의 이행과 관련한 이 건투자신탁의 자금 부족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 년 5월 14일 이 약정서를 체결한다.

- 아 래 -

제1조 (자금 부족에 대한 "집합투자업자"의 통지 의무)

- (1) "집합투자업자"는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이 건 투자신탁 (또는 그 신탁업자)이 "장외파생상품계약"상의 채무(계약의 해지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 이건 투자신탁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청산잔액 등 포함)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유의발생경위, 해당 채무액(이하 "자금 부족액")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"집합투자업자"는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위 통지서를 송부하는 동시에해당 통지서를 "스왑기관"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.
 - (2) "집합투자업자"와 "스왑기관"은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결제 예정일로부터 5영 업일 이전에 이 건 투자신탁의 예상 결제액 보유상황에 관하여 협의하기로



한다.

(3) "집합투자업자"가 제1항의 "자금 부족액"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"스왑기관"은 "집합투자업자"에게 서면으로 제1항의 "자금 부족액" 통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, "집합투자업자"는 "스왑기관"의 촉구에 따라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"

제2조 ("집합투자업자"의 추가 투자 요청의무)

- (1) "집합투자업자"는 제1조의 "자금 부족액" 통지와 동시에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게 "자금 부족액"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체결된 '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' 관련 투자자약정서(이하 "투자계약서")에 따라 추가 투자를 요청(Capital Call)하여야 한다. 이러한 추가 투자 요청은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에 의하여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정상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"집합투자업자"는 제1항의 추가 투자 요청을 한 후 이를 즉시 "스왑기관"에게 통보하기로 한다.
- (3) "집합투자업자"가 제1조의 "자금 부족액" 통지와 동시에 제1항의 추가 투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, "집합투자업자"는 제1조의 "자금 부족액"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제1항의 추가 투자 요청을 하여야 한다.
- (4) "스왑기관"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"자금 부족액" 통지를 촉구하는 경우 또는 "집합투자업자"가 제1조의 "자금 부족액"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추가 투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"집합투자업자"에게 서면으로 추가 투자 요청을 촉구할 수 있으며, "집합투자업자"는 "스왑기관"의 촉구에 따라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


제3조 (적용범위)

(1) "장외파생상품계약"에 따른 책임은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(제2조에 따라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투자액을 포함)을 한도로 하여 이 건 투자신탁에서 부담 한다. 다만, "집합투자업자"는 "투자자계약서", "양수인확약서" 등에 근거하여 투자신탁 투자자들이 추가 수익증권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, 분쟁, 소 제기 등의 방식으로 해당 투자자들로부터 "장외파생상품계약"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"스왑기관"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아 "스 왑기관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 (투자금 및 추가 투자금의 사용 제한)

- (1) "집합투자업자"는 제2조에서 정한 추가 투자 요청을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) "집합투자업자"는 제2조에 따라 추가 투자 요청을 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투자 받은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을 장외파생상품 계약상 이 건 투자신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
이 약정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해석되고 규율 되며,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.



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,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"집합투자업자"
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
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, 한화금융센터
대표이사 김 용 현 (인)

"스왑기관"
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
대표이사 정 일 문 (인)



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,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"집합투자업자"
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
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, 한화금융센터
대표이사 김 용 현 (인)

"스왑기관"
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
대표이사 정 일 문

